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85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정춘생 · 최민희 · 서왕진
황운하 · 이해민 · 김준형
박은정 · 강경숙 · 김재원
백선희 · 김선민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정당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모욕·비방하거나 차별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사회

적 신뢰와 공동체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개인 등을 모욕·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2. 인종, 출신국가, 지역,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여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
3.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제37조의3(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①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

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⑧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현수막 표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정</u> <u>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u> <u>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u> <u>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u> <u>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u> <u>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개</u> <u>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u> <u>하거나 비방하는 것</u> <u>2. 인종, 출신국가, 지역, 성별,</u> <u>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u> <u>집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u> <u>표시하여 사회적 적대감을 조</u> <u>장하는 것</u> <u>3.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u> <u>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u> <u>표현을 사용하는 것</u>
<u><신 설></u>	<u>제37조의3(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u> <u>①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u> <u>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u> <u>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u> <u>막심의위원회를 둔다.</u>

②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⑧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